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시·군별 지원기준이 상이함으로 강원도 내 영농인의 지역별 차등수혜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영농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제재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다.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라.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으로 27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03.06. ~ 2023.03.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상의”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으로, “지급하는”을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과 인명”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제9조제2항 본문 중 “보상금은 피해액의 70%”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500만원, 사망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구제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u>“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u></p> <p>5.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 -----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 -----.</u></p> <p>5. (현행과 같음)</p> <p>6. <u>“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u></p>
<p>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생 략)</p> <p>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u>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u></p>	<p>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농작물과 인명</u>----- ----- -----.</p>
<p>제5조(보상 제외대상)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보상 제외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u></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생략)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
-----.

만, 규칙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1조(구제단의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신 설>

-----.

③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500만원, 사망 1,000만원까
지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구제단의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
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
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
후 구제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환경과 환경과장 전 원 표
연락처	(033) 330 - 2340